

#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

[ 2018. 4. 6 ]  
규칙 제1401호

일부개정 2019. 3. 4 규칙 제1444호  
 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20. 2. 21 규칙 제1477호  
 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20. 6. 17 규칙 제1485호  
 일부개정 2021. 12. 31 규칙 제1519호  
 일부개정 2023. 7. 13 규칙 제1544호  
 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  
 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)  
 일부개정 2024. 7. 4 규칙 제1556호  
 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 
 일부개정 2024. 12. 3 규칙 제1562호  
 일부개정 2025. 3. 20 규칙 제156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연천군 포상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** ① 「연천군 포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표창장의 포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
2. 감사장(패)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3조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관이 되며, 위원은 문화체육과장, 종합민원과과장, 경제교통과장, 환경보호과장, 농업정책과장이 된다. <개정 2019. 3. 4, 2020. 2. 21, 2023. 7. 13, 2024. 7. 4>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④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이 된다.

**제4조(공적심사 기준)**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

- 1.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
- 2. 공적이 질적,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
- 3.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, 조직,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
- 4.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

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1.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
- 2.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재직 중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
- 2.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
- 3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**제5조(자료 제출 등의 요구)**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대

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포상 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9. 3. 4 규칙 제1444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과장”을 “행정담당관”으로, “문화관광체육과, 환경보호과장, 지역경제과장, 종합민원과장, 농축산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, 일자리경제과장, 종합민원과장, 환경보호과장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㉕ 및 ㉖ 생략

부칙 <2020. 2. 21 규칙 제1477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일자리경제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0. 6. 17 규칙 제148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31 규칙 제151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3 규칙 제1544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  
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7. 4 규칙 제1556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경제교통과장”으로 한다.

⑨ 및 ⑩ 생략

부칙 <2024. 12. 3 규칙 제1562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수여된 표창은 이 규칙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5. 3. 20 규칙 제156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5. 3. 20>

**표창장 포상기준**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□ 민간인(개인, 단체) 표창장 포상 기준

구분	포상구분	포상자격	포상인원	부상품	비고
1	공중위생발전 유공	공중위생 발전 유공자	연 6명 이내	-	
2	구석기축제 유공	구석기 축제 발전에 기여한 자	연 20명 이내	-	
3	근로자의 날 유공	모범근로자	연 5명 이내	-	
4	노인업무 유공	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	연 15명 이내	-	
5	노인의 날 유공	61세 이상 모범노인	연 12명 이내	-	
6	농업인 대상	농업 및 농업단체 발전에 기여한자	연 5명 이내	-	
7	독서문화진흥 유공	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	연 5명 이내	-	
8	모범군민	분야별 귀감이 되는 사람	연 10명 이내	-	
9	모범졸업생	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귀감이 되는 자	학교별 2명 이내	-	
10	민방위·비상대비 업무 유공	민방위·비상대비 업무 유공자	연 10명 이내	-	
11	방역 유공	방역 활동을 통해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	연 30명 이내	-	
12	보육 유공	어린이집 등 관리우수자	연 5명 이내	-	
13	보훈 유공	보훈단체 등 공적 우수자	연 5명 이내	-	
14	사회복지의 날 유공	사회복지 및 나눔복지발전 공적 우수자	연 10명 이내	-	
15	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유공	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	연 20명 이내	-	
16	생활체육 유공	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	연 20명 이내	-	
17	소방업무 유공	소방공무원, 모범의용소방대원 등	연 12명 이내	-	
18	식품안전관리 유공	식품안전관리 모범업소	연 10개소 이내	-	
19	양성평등 유공	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	연 5명 이내	-	
20	여성복지 유공자	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	연 12명 이내	-	

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

구분	포상구분	포상자격	포상인원	부상품	비고
21	예비군동원 훈련 유공	동원예비군 훈련 유공자	연 8명 이내	-	
22	우수 농촌 지도자 회원	1년 이상 활동 농촌지도자회원	연 12명 이내	-	
23	우수생활개선회원	모범 활동 회원	연 10명 이내	-	
24	자랑스러운 기업인	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	연 10명 이내	-	
25	자원봉사활동 유공	자원봉사활동 유공자	연 40명 이내	-	
26	장애인의 날 유공	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	연 12명 이내	-	
27	재난복구 유공	재난복구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	연 60명 이내	-	
28	재난예방 유공	재난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	연 40명 이내	-	
29	지역발전 유공	군정발전 유공자	월 12명 내외 (연 150명 한도)	-	..
30	평생학습활동 유공	평생학습활동 유공자	연 3명 이내	-	
31	환경업무 유공	환경보호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	연 20명 이내	-	

□ 공무원(개인, 부서) 표창장 포상 기준

구분	포상구분	포상자격	포상인원	부상품	비고
1	군정을 빛낸 우수시책사업	제안자 중 우수자	연 2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2	모범공무원	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	월 4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3	장기근속 모범공무원	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2. 연천군에서 8할 이상 근무 3.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	연 20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4	모범공무직	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	분기별 3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5	민방위·비상대비 업무 유공	민방위·비상대비 업무 유공자	연 4명 이내	없음	
6	사회복지 유공	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자	연 3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7	소송수행 유공	1. 군이 원고인 경우 70%이상 인용 판결시 2. 군이 피고인 경우 70%이상 기각 판결시	판결 확정자 전원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8	양성평등 유공	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자	연 1명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9	자랑스러운 공무원	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	반기별 2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0	자원봉사 활성화 유공	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	연 1명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1	재난복구 유공 공무원	재해 복구에 기여한 자	연 5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2	재난예방 유공 공무원	재난 예방에 기여한 자	연 10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3	제안제도	제안자 중 우수자	입상자 전원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4	특색사업 발굴	제안자 중 우수자	입상자 및 부서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15	환경업무 유공	환경보호 및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	연 10명 이내	예산범위 내 (자체계획)	

[별표 2] <개정 2024. 12. 3>

감사장(패)의 포상기준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포상구분	포상자격	포상인원	부상품
지역발전 유공	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, 단체 및 군부대	연 12명 이내	-
군민의날 민관군 유대 발전 유공	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및 군부대	연 10명 이내	-
퇴직 이장	1년 이상 봉직하다 퇴직한 이장	퇴직자 전원	-
주민자치(위원)회 퇴임 위원(회)장	1년 이상 봉직하다 퇴임한 주민자치(위원)회 위원(회)장	퇴임자 전원	-

[별지 제1호서식]

제	호				
		표	창	장	
주소 또는 소속					
직			성명		
		(표	창	문)	
				년	월 일
				연	천 군 수
					인

[별지 제2호서식]

제	호				
		감	사	장	
주소 또는 소속					
직			성명		
		(감	사	문)	
				년	월 일
				연	천 군 수
					인

[별지 제3호서식]

체	호
상 장	
주소 또는 소속	
직	성명
(상 문)	
년 월 일	
연 천 군 수 인	

[별지 제4호서식]

## 공 적 조 서

(앞면)

성 명							(한 자)	
생 년 월 일							군 번 (군인인 해당)	
							국 적 (외국인의 경우)	
주 소								
직 업							소 속	
직 급			직 위			대 외 직 명		
근 무 기 간	· ( · 년 월 ) · ~						공 적 분 야	
공 적 기 간	· ( · 년 월 ) · ~							
공적요지(50자 내외)								
추 천 훈 격				추 천 순 위				
조 사 자								
소 속							직 위	
직 급							성 명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추천관 직위 :			성명 :			직인		

(후면)

주요학력 및 경력									
년	월	일	이	력	년	월	일	이	력
과거 표창기록 (훈장, 포장, 표창 순으로 기록)									
년	월	일	내	용	년	월	일	내	용
공 적 사 항									

